

시설 운영수칙 및 급여이용 정보제공

2020. 1. 1.

따뜻한 집

따뜻한집

급여이용 정보제공

1 운영수칙 개요

1. 입소정원

- 9명

2. 입소계약

가. 입소대상

- 따뜻한집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~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

나. 입소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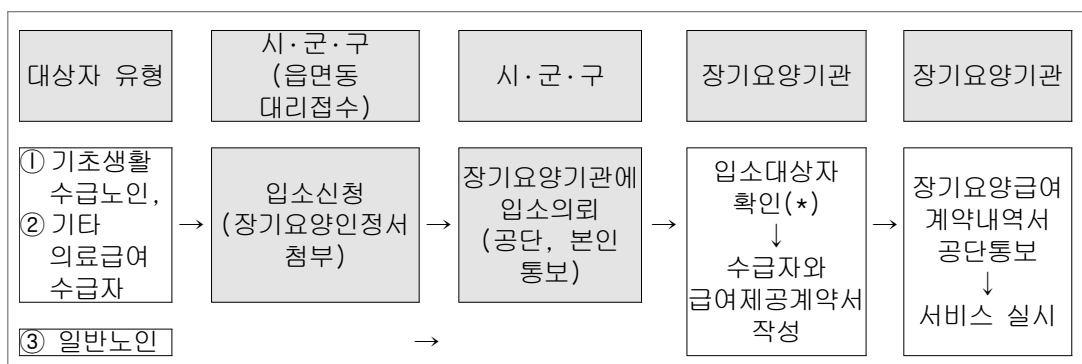
-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~5등급 시설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.
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: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 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
→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→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

따뜻한집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.

- 다 음 -

<보건복지부 입소 상세 절차>



1. 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자

1)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(장기요양인정서 첨부, 입소·이용신청서 제출)

※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

○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(시설급여 이용가능)를 첨부하여야 하며, 신청접수는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

2)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

※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에서 함

○ 각 시·군·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,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

○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"4.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"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

3)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의뢰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

4)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○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

○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

5)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,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

○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·내용·비용 등,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

○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)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

6)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(별지 제11호서식)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

2. 일반 노인

-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
-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(비급여항목별 비용, 입소계약조건 등)을 협의(장기요양인정서 첨부)
- 이하 위 ‘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자’의 4) ~ 5)와 동일

다. 구비서류

따뜻한집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소계약서 (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-동의서 포함)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4. 신분증사본(주보호자, 입소자)
5. 사진 2매
6. 입소이용의뢰서(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)
7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8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9.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
10. 신체구속동의서(필요 시)
11.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(입소자, 주보호자)

라. 입소계약

- 따뜻한집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1) 계약목적 -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2) 계약대상자 -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.
 - 3) 계약기간 -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상 명시토록 하며,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4) 입소기간의 연장 - 계약서 상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.
 - 5) 입소보증금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~5 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.
 - 6)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- 따뜻한 집은 입소자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,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,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(월 이용료-본인부담금, 비급여)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,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(단,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).
 - 7)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가)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 -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 -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
 - 나)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 - 다)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

용,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.

라) 합숙용(2인용)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(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1인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).

마)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-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(산소공급, 석션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-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, 호스피스 케어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한다.
-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
-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

8) 계약서 -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)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9) 계약서 복사본 발부 -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복사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복사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,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, 수령자 서명 등을 재하도록 한다.

10) 신원인수인의 권리 - 신원인수인인 따뜻한집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11) 신원인수인의 의무 - 신원인수인인 따뜻한집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.

12) 입소자의 의무 -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,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,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,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,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,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.

마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- 따뜻한집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

3.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

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- 1)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2)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3)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- 4)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나.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1)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2)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)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 - 나)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 - 다)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다.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- 1)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2)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따뜻한집은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라.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- 1)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따뜻한집은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단,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2)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마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1)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- 2)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4. 시설물 사용 수칙

- 가.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.
- 나.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단,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.
- 다. 따뜻한집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
2020년 1월 기준 따뜻한집 직원 현황

번호	직위	이름	업무내용
1	원 장	조양선	시설 운영 총괄
2	사회복지사	김을숙	회계 · 시설 업무 및 자원 관리
3	간호조무사	황수임	어르신 케어 간호서비스
4	요양보호사	장명희	어르신케어서비스
5	요양보호사	정숙희	어르신케어서비스
6	요양보호사	이연생	어르신케어서비스
7	조리원	권순자	어르신식사 및 간식

- 시설급여 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- 장기요양등급 1, 2, 3, 4

(단위:원)

월 입소 비용 (일반기준 20%본인부담)				
구 분		1등급(62,230)	2등급(57,750)	3~4등급(53,230)
30일	본인부담금	373,380	346,500	319,380
	식재료비 · 간식비	240,000	240,000	240,000
	합 계	<u>613,380</u>	<u>586,500</u>	<u>559,380</u>
31일	본인부담금	385,820	358,050	330,020
	식재료비 · 간식비	248,000	248,000	248,000
	합 계	<u>633,820</u>	<u>606,050</u>	<u>578,020</u>

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1. 식사재료비

- 1식 2,500원 (1일 / 7,500원, 30일 / 210,000원)

2. 간식비

- 1일 2회 / 500원 (1회 500원기준, 2회중 1회분 500원은 시설 후원품으로 대체)

3. 기타 (이·미용비, 1인실 이용비 등)

- 무료

2020년 입소비용 안내

1. 입소 수가 내역

2020 입소비용에 관한 내역입니다. (단위 : 원/ 30일 일반 기준)

시설구분	1등급	2등급	3~4등급
시설급여	1,866,900	1,732,500	1,596,900

2. 비급여 항목 내역

○ 식재료비 : 1일 3식 7,500원 (식사 1회 당 2,500원)

○ 간식비 : 1일 2회 500원 (1회 500원기준, 2회중 1회분 500원은 시설 후원품으로 대체)

[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예]

○ 1등급이신 어르신께서 30일을 따뜻한 집에 계실 경우

30일 x 1등급 1일 급여비용 x 20% = 본인부담금

본인부담금 + 비급여 항목(식재료비 + 간식비) = 한 달 시설 입소 비용

< 30일 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>

1등급 어르신	2등급 어르신	3~4등급 어르신
613,380	586,500	559,380

< 31일 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>

1등급 어르신	2등급 어르신	3등급 어르신
633,820	606,050	578,020

5 시설의 규모 및 설비

1. 시설 규모

- 가. 대지면적 - 595 m²
 나. 건축면적 - 293.1m²

2. 시설 설비

구 분 시설별	침실	사무실	요양 보호실	자원 봉사 자실	의료 및 간호 실	물리 치료 실	프로 그램 실 (거실)	식당 및 조리 실	비상 대비 시설	화장실	세면 및 목욕 실	세탁장 및 건조장
집	5	1	-	-	1	-	1	1	1	4	1	1

6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

1.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

- 상품명 :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
 ○ 보장기간 : 2019.10.02 ~ 2020.10.02

2. 화재보험 가입

- 상품명 : 메리츠화재해상보험
 ○ 보장기간 : 2019.06.24 ~ 2020.06.24

따뜻한집